

작성 방법

1. ㉔총계란: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·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2. ㉑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㉓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, ㉒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(2)의 ㉕일련번호 및 ㉑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.
3. ㉖음·면지역소재란 내지 ㉘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: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·집계하여 적습니다.
 - 가. ㉖음·면지역소재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㉗금융·보험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㉘비거주자와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㉙농어민과의 거래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㉚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.
 - 바. ㉛비영리법인과와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사. 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아. ㉝사업의 양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자. ㉞전기통신·방송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차. ㉟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카. ㊱공매·경매·수용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타. ㊲부동산구입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(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)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파. ㊳주택임대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6호(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)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하. ㊴택시운송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거. ㊵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너. ㊶항공기 항행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더. ㊷간주임대료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러. ㊸연체이자 지급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머. ㊹송금명세서 제출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버. ㊺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: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(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)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(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).
 - 서. ㊻유료도로 통행료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4. 영수증수취명세서(2)의 ㉕일련번호란 내지 ㉞비고란 :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.

